

2026 박문각 김희상 부동산공법 체계도 정오표(초판기준) 1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2025.12.2.개정)
주택법(2026.2.3.개정) 포함

페이지	수정 전	수정 후
13p point04 도시·군 관리계획	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	해양수산부장관(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또는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공유수면은 사·도지사)이 결정
16p point11 용도구역	수산자원보호구역: 해양수산부장관 + 수산자원을 보호·육성(공유수면)	수산자원보호구역: 해양수산부장관(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또는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공유수면은 사·도지사) + 수산자원을 보호·육성(공유수면)
65p point03 관리처분 계획(2), 청산금	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① 정비구역 지정은 ~ (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사가 있는 때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.) ⇒ 괄호 위치 수정	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① 정비구역 지정은 ~ (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사가 있는 때)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.
78p-79p 3. 공개공지 등	설치대상지역 • 준공업지역	설치대상지역 • 준공업지역 •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·공고한 구역
100p-101p 2.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	적용대상: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와 ~ 공동주택(도시형 생활주택, ~ , 혁신지구재생사업은 제외)	적용대상: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와 ~ 공동주택(도시형 생활주택, ~ , 혁신지구재생사업,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 은 제외)
102p point03 분양가상 한제	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 ⑧ 추가	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 ⑧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에서 건설·공급하는 주택
110p 04 주택의 공급	② 적용제외: ~ ③ 추가	② 적용제외: ~ ③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에서 건설·공급하는 주택